

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472
----------	------

2016년 12월 6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16년 10월 31일
- 다. 회부일 : 2016년 11월 3일
- 라. 상정일 :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
2016년 12월 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태웅)

가. 제안 이유

- 1) 수안보연수원은 서울시 직원의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과 직원 및 가족의 휴양 시설로 개원 이후 현재까지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를 맡아 해 왔으며 2017. 5. 31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,
- 2)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연수원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
- 위탁기간 : 2017. 6. 1 ~ 2019. 12. 31 (31개월)
- 소요예산 : 연 2,053,260천원 (월 171,105천원)
※ 최종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
- 선정방법 : 공개경쟁입찰

다. 시설현황

- 위 치 :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99
- 부지면적 : 59,815㎡
- 건물면적 : 연면적 21,731㎡, 2개동
- 연수시설 : 객실(110실), 대강당, 세미나실, 중·소회의실 등
- 편의시설 : 체력단련실, 당구장, 탁구장, 야외수영장, 사우나, 노래방, PC방, 매점, 식당 등

라. 주요 위탁내용

- 수안보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
- 연수가족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
-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지원 운영 등

마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

< 그간의 위탁경과 >

- ▶ 수안보연수원 개원 : 2008. 7. 11
- ▶ 최초위탁(1차) : '08.6.1~'11.5.31 (수탁업체 : (주)HTC)
- ▶ 재 위 탁(2차) : '11.6.1~'14.5.31 (수탁업체 : (주)HTC)
- ▶ 재 위 탁(3차) : '14.6.1~'17.5.31 (수탁업체 : (주)오브이름스)

바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연수원은 기관(부서)별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은 물론이고 우리시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시설인 바
-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, 관리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- ▶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▶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▶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- ▶ 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한 태 식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 위탁 기간 만료 예정(2017년5월31일)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- ※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” 개정('16.1.7)

수안보 연수원 시설 현황

- 위 치 :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
- 부지면적 : 59,815㎡(대지 : 34,764㎡ / 임야 : 25,051㎡)
- 규 모 : 연면적 21,731.15㎡
- 주요시설 : 객실 110실(일반객실 100실, 연수객실 10실)
 - 연수시설 : 대강당, 중강당, 시청각실, 소회의실 등
 - 편의시설 : 체력단련실, 당구·탁구장, 야외수영장, 사우나, 노래방, PC방, 북카페, 키즈클럽, 편의점, 풋살족구장, 야외산책로 등

-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, 2008년 위탁이후 (주)HTC가 운영해오다가 2014년 6월부터 (주)오브이룸스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해 왔음.

※ 서천 및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현황

구분	위탁기간	업체명	위탁금액(백만원)	비고
서천	'07.6.1~'10.5.31	(주)HTC	1,980	
	'10.6.1~'13.5.31	(주)HTC	1,980	
	'13.6.1~'16.5.31	(주)HTC	2,020	
수안보	'08.6.1~'11.5.31	(주)HTC	1,890	
	'11.6.1~'14.5.31	(주)HTC	1,969	
	'14.6.1~'17.5.31	(주)오브이룸스	2,013	
	'17.6.1~'19.12.31	-	2,053	공고금액

○ 서울시는 수안보연수원외에도 서천연수원과 속초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으며, 서천연수원과 수안보연수원은 민간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속초수련원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.

※ 속초수련원, 수안보, 서천연수원 운영현황

구분	속 초	서 천	수 안 보
위 치	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	충남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74-87	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에1길99
개원일자	'97. 3. 15('09.5.1 리모델링)	'07. 6. 26	'08. 7. 11
객 실 수	80실	151실(단체용 15실)	110실(단체용 10실)
운영업체	직영	민간위탁 - (주)H·T·C	민간위탁 - (주)오브이룸스
위탁비용	-	2,020백만원(년)	2,013백만원(년)
위탁기간	-	'13.6.1~'16.5.31(3년)	'14.6.1~'17.5.31(3년)
운영인력	33명(직원 14,공무17,촉탁2)	48명/4팀(지원,객실,시설,식음)	45명/4팀(지원,객실,시설,식음)
건물규모	지하2층, 지상8층 (1동) 연면적 7,243 m ²	지하2층, 지상4층 (4동) 연면적 18,925 m ²	지하2층, 지상6층 (2동) 연면적 21,731 m ²
부지면적	25,936 m ²	97,684 m ²	59,815 m ²
교육시설	강당 (100석) 세미나실 1 (30석) 세미나실 2 (16석)	강당 (200석) 중강의실 1 (40석) 중강의실 2 (40석) 시청각실 (40석) 소강의실 1,2,3 (각 10석)	강당 (150석) 중강의실 1 (65석) 중강의실 2 (138석) 시청각실 (40석) 소강의실 1,2,3,4 (각 10석)
부대시설	사우나, 휴게실, 식당, 매점, 노래방, PC방, 테니스장 등	사우나, 식당, 수영장, 노래방, 매점, PC방, 당구장, 탁구장 등	사우나, 식당, 수영장, 노래방, 매점, PC방, 당구장, 탁구장 등

※ 속초수련원 인력현황 및 결산금액

(2016.11.30. 기준)

총계	공무원			공무직				촉탁직
	소계	일반직	관리운영직	계	청소	시설	경비	청소
32	13	8	5	17	9	6	2	2

※ 속초수련원 3년 결산금액(인건비 및 운영비 등)

(단위:천원, '16.11.30)

구분		2014년	2015년	2016년	비고
속초수련원	소계	1,899,075	2,275,473	2,047,076	
	인건비	1,395,918	1,675,618	1,541,647	
	운영비	503,157	599,855	505,429	

※ 속초수련원 인건비는 서울시 통합편성이며 운영비는 결산자료임.

-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은 「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계획이며,
- 집행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자 심의 위원회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임.

위탁 운영 방안

- 위탁근거 : “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” 제10조
- 위탁사무 : 연수원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
- 위탁기간 : 2017. 6. 1 ~ 2019. 12. 31 (31개월)
- 위탁금액 : 연2,053백만원(월171백만원)
 - ※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결정
- 업체선정 : 공개경쟁입찰
 - (참가자격)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직접경영 또는 위탁운영자, 제안서 설명에 참가한 업체, 계약법령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등
- 제안서 평가(적격자 심의위원회)
 - 『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9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~9명 이내 구성
 - 평가위원회 구성
 - ▶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 - ▶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기술사,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 - ▶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)에서 추천한 사람
 - ▶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 - ▶ 관계공무원
 - ▶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나. 수안보연수원 운영 관련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
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,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음.
- 역으로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,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.

▶ **민간위탁의 장·단점**

장 점	단 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·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·기술성 제고 ·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· 공익성·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합적·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 체계 미흡 · 공익성(공공성) 퇴색 ·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(사용료)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·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, 프로그램 개발 저조 ·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·노후화 촉진 ·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

- 집행부는 호텔(콘도) 등 전문 경영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.
- 대통령령인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제1항1)에 따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바, 수안보연수원 운영은 연수훈련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 시설로서 호텔 등 숙박시설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측면에서 볼 때, 민간수행이 보다 효율적이며 민간의 전문성·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최근 서울시연수원 이용 만족도 조사* 결과를 보면, 직영으로 운영되는 속초수련원의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바, 관행적·전례답습적으로 민간위탁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민간위탁과 직영시의 장·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투자 대비 더 효율적이고,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며, 서울시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.

〈서울시연수원 이용 만족도 조사〉

<p><input type="checkbox"/> '16년 만족도조사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대상 : 서울시 실·국·본부 및 사업소, 25개 자치구 직원 ○ 모 집 단 : 최근 1년간 서울시 3개 연수원 이용대상자 ○ 표 본 : 각 연수원(속초,서천,수안보) 무작위 300명 추출 - 1년간('15.10~'16.9) 이용자 명단 중 무작위 표본추출 ○ 조사내용 : 질문 문항수 30개 이하 - 예약시스템, 프론트서비스, 객실이용, 부대시설이용, 기타서비스

- 1)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- ② 생략

- 조사방법 : 전화면접
- 조사시기 : '16.10. 17 ~ 10. 21.(5일간)
- 조사기관 : (주)한국능률협회컨설팅
- '16년 만족도조사 결과
- 종합만족도

구분	종합만족도	속초	서천	수안보	조사기관
'16년도	82.8	84.4	80.6	83.4	한국능률협회컨설팅

- 한편, 현재 (주)오브이룸스가 수탁을 하고 있는 수안보연수원의(이전에는 (주)HTC에서 운영하였으며, 서천연수원의 경우 (주)HTC가 4차례 연속 수탁 받고 있음) 민간 위탁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.
- 더 나아가, 민간위탁을 할 경우,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(제14조)²⁾ 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³⁾(제16조)에 따라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2) 제14조(지휘·감독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제16조(처리 상황의 감사)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3) 제16조(지도·점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지도·점검 시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·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7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수안보연수원은 서울시 직원의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과 직원 및 가족의 휴양시설로 개원 이후 현재까지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를 맡아 해 왔으며 2017. 5. 31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
- 나.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- ※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” 개정('16.1.7)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연수원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
- 위탁기간 : 2017. 6. 1 ~ 2019. 12. 31 (31개월)
- 소요예산 : 연 2,053,260천원 (월 171,105천원)
※ 최종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
- 선정방법 : 공개경쟁입찰

나. 시설현황

- 위 치 :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99
- 부지면적 : 59,815 m^2
- 건물면적 : 연면적 21,731 m^2 , 2개동
- 연수시설 : 객실(110실) 대강당, 세미나실, 중·소회의실 등
- 편의시설 : 체력단련실, 당구장, 탁구장, 야외수영장, 사우나, 노래방, PC방, 매점, 식당 등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수안보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
- 연수가족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
-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지원 운영 등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○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

< 그간의 위탁경과 >

- ▶ 수안보연수원 개원 : 2008. 7. 11
- ▶ 최초위탁(1차) : '08.6.1~'11.5.31 (수탁업체 : (주)HTC)
- ▶ 재 위 탁(2차) : '11.6.1~'14.5.31 (수탁업체 : (주)HTC)
- ▶ 재 위 탁(3차) : '14.6.1~'17.5.31 (수탁업체 : (주)오브이름스)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연수원은 기관(부서)별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은 물론이고 우리시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시설인 바
-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, 관리 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- ▶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▶ 제4조의3(의회의 동의 및 보고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▶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

-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- ▶ 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기타사항

- 수안보연수원 운영관련 민간의 연수원 운영 경험 도입 등 '직영' 보다 '민간위탁'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제안
- ※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지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」 (서울연구원, '06.10.1)
- ※ 작성자 : 인력개발과 복지노무팀 김형태(☎2133-5783)